

제2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20조(계약목적) 1.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요양원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21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관과 같이 진행한다.

3.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5.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 요양원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시설등급 및 등외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요양원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 계약 당사자(기관,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 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요양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 3) 기타 요양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5.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때 장기요양 시설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2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 · 의원 입원 시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6) 기타 입소대상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지불 등 모든 것에 대한 부담 의무

4. 입소자의 권리

-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3) 모든 생활 어르신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2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5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공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때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